

**식료품과 음료품, 농·축·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
결정기준**(제15조제2항 관련)

1. 반출 또는 소비 통제의 결정기준

구 분			식료품과 음료품			농·축·수산물 (Bq/kg)
			야채·과일 (Bq/kg)	물·우유 (Bq/ℓ)	유아식품 (Bq/kg)	
방사성 핵종	1 군	Cs-134, Cs-137, Ru-103, Ru-106, Sr-89	1,000	200	100	2,000
	2 군	I-131, Sr-90	500	100	10	1,000
	3 군	U-235, U-238	100	20	10	100
	4 군	Am-241, Pu-238, Pu-239, Pu-240, Pu-242	10	10	1	10
	5 군	H-3	100kBq/ℓ			

2. 반출 또는 소비 통제의 방법

가. 식료품

- 1) 오염된 식료품은 폐기할 것
- 2) 오염된 식료품의 판매 및 가공처리를 방지할 것
- 3) 오염되지 않은 식료품과의 혼합을 방지할 것

나. 음료품

오염된 식수원은 봉쇄 조치할 것

다. 오염지역의 방목된 젖소로부터 나오는 우유

- 1) 남아 있는 방사능농도가 결정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치즈 등 다른 식품으로 가공하여 보관할 것
- 2) 남아 있는 방사능농도가 결정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폐기할 것

라. 농·축산물 및 가축 사료

- 1) 반감기가 짧은 핵종으로 오염된 경우 오염된 농·축산물은 일시 저장하고 확인한 후 사용할 것
- 2) 반감기가 긴 핵종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폐기할 것